

2005년 생명윤리법 헌법소원 추진

생명윤리협의회, 배아의 연구목적 사용은 위헌 ... 의사만 사용해야

2005년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대해 국내 일부 법학자와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윤리운동협의회(공동의장 강재성 고대의대 교수·김일수 고대법대 교수·김삼환 목사)에 따르면, 협의회는 2005년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최근 협의회에 태스크포스(전담)팀을 구성했다.

협의회는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누가의사회,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등 20여개 종교·의료단체로 구성돼 있다.

공동의장인 김일수 교수는 “현행 생명윤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잉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있으나, 배아는 엄연한 생명체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연구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정신을 위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성 교수(산부인과)는 “모든 의사들은 수정된 이후 시점부터 하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교육받아왔고 그것이 정답으로 의사가 아닌 동물학자들에 의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아를 윤리의식 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인 이창영 신부도 최근 생명윤리법의 잉여배아 사용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명윤리운동협의회 조덕제 변호사는 “협의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헌법소원이 현실적 인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나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5/01/07>